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1491 버호

제출연월일: 2018. 11. 8.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지원 등을 확대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 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자금의 지원 및 자금의 용도(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자 지원(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업무위탁, 변경신고, 사후관리, 보고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근거법규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4.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2019년 당초예산 반영, 비용추계서 반영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2018, 9, 17, ~ 10, 10,(의견없음)

10 (제211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 2.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 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자금의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2.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 3.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 4. 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등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
 - 2.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 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지원을 할 경우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이자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지급방법, 금융기관과의 협약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기관에 위탁수수 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변경신고) 제8조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신규 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수신 경제산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일자리과-65088(2018.9.13.)호와 관련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여 성 가 족 과 장

주무관 여성정책계장 여성가족과장 ^{전결 2018. 9. 27.}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049 (2018. 9. 27.) 접수 경제산업과-1841 (2018. 9. 27.)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 http://www.junggu.ulsan.kr

전화번호 052-290-4903 팩스번호 052-290-4909 / ssalnoon@korea.kr / 대국민 공개

울산큰애기와 함께하는 울산중구 여행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38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기관명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부서	부서명	경제산업과				
	담당자명	차연희	전화번호	052-290-33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경제일자리과)	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2조, 안 제3조), 자금의 지원 및 자금의 용도(안 제4조 ~ 안 제5조),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자 지원(안 제6조 ~ 안 제8조), 업무위탁, 변경신고, 사후관리, 보고 등(안 제9조 ~ 안 제12조)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9월 22일

울산광역시중구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경제산업과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ㅇ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이자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ㅇ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및 위탁수수료
- ㅇ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지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위탁수수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경영컨설팅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소 계(a)	1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975,000
수입	시 비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소 계(b)	0	0	0	0	0	0
	총비용(a-b)	1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975,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비	-	-	-	-	-	-
구비	1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975,000
합계	1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975,000

1. 부대의견: 없음

2. 협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3.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차연희(☎290-3312)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비	일반회계						
	구비	1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975,000
	합계	1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975,000

2. 재원조달방안: 구비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5.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차연희(☎290-3312)